

“합동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양 정부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해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은 한-미 양국간의 계약을 통해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계약에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일반에서 보듯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1966년 이전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소급효 인정과 사용필요성의 판단주체를 미국에 일임(제2조 제1항/나) 조항을 “시설과 구역은 2000년까지 계약이 체결되거나 유보권을 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주둔군의 활동범위 및 구역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현재의 미군주둔 시설과 구역에 대해 기지사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2000년 이전에라도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에는 구역사용료 지불, 양 정부간 계약, 5년마다 계약갱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상회복 의무 불필요 및 보상의무 불필요(제4조 제1항) 조항을 “원상회복 의무 및 배상의무”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미군주둔의 목적이 냉전시대와는 달리 미국과 한국의 공통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 한국정부에 환경조사권이 신설되어야 한다(1993년 ‘독일보충협정’ 제35조).

다섯째, 미군시설과 구역안에서 미군의 위험한 무기 반입 또는 군사작전은 사전 한국에 통보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예 : ‘미-일 SOFA’지침 및 미-필리핀 군사기지 협정 ; 이에 대해서는 제3장 타국 SOFA와의 비교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음). 또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보가 한국정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의 절차 복잡성(제2조 제3항) 조항

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과 구역의 불필요시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반환조건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위에서 제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SOFA 개정이 필수적이고 다음으로는 행협을 둘러싸고 있는 방위조약 및 합의의사록, 양해각서까지 포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과도한 방위비 분담이 기초인 「주둔경비특별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본 협정 제5조 1(주둔경비 미군분담원칙)에 위배된다.

미합중국은,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부담하기로 합의한다(제5조 제1항). 그런데 1991년 SOFA를 개정하면서 부속 문서로서 「주둔경비특별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소유의 훈련장, 부두, 공군기지 등 시설을 무상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유지비 등의 부담을 면제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방위비 분담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인정받고 있다.

제2절 형사관할권 관련 조항

1991년 2월 1일 개정 양해사항으로는 1967년보다 형사관할권해사에서 자동포기 조항 개선,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 요구시 호의적 고려,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한국고용원의 노동조건을 국내노동법에 일치시킨 점 등에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개정양해사항으로 종래의 불평등 요소가 근본적으로 치유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한-미 SOFA'는 'NATO SOFA'나 '미-일 SOFA' 및 '미-호주 SOFA'에 비해 상기에서 언급한 불평등 조항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 부속문서는 '한-미 SOFA' 본문보다 한-미간의 동반자적인 평등한 관계정립을 크게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부속문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1년의 개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이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남겨 둔 것은 큰 잘못이다. 향후 합의의사록 부속문서도 선진국형인 'NATO SOFA' 수준으로 개정할 것이 요망된다. 가능한 개정 양해사항중 한미간 평등성에 기여하는 조항은 합의의사록으로 수렴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예로 'NATO SOFA'이나 '미-일 SOFA' 및 '미-호주 SOFA'는 형사관할권의 귀속에 있어서 군파견국과 접수국이 완전한 평형을 유지하면서 다만 군 주둔의 본래임무를 위한 "군공무수행중"의 범죄에 한해 군파견국의 재판관할권에 우위를 인정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형사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원칙문제와 관련하여 '미-일 SOFA'의 합의

의사록' 및 'NATO SOFA'와 '독일보충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인의 체포"로부터 "재판절차"에 이르는 각종세부규정은 주둔외국군대의 범죄에 대한 접수국의 형사관할권 행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보장으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수국의 형사관할권행사에 대하여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제한이 될 수 있는 공무수행중의 범죄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경우에 그것이 공무수행중의 범죄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공무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또 평화시 군속 및 가족의 범위에 대해 한국측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본 협정 제22조 제3항 (가)이 규정 중 "군속 및 가족"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불평등한 현행 '한-미 SOFA'의 내용조차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미군당국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행협의 실천은 대부분이 미군당국의 협조에 많이 좌우된다. 향후 '한-미 SOFA'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미군당국의 재량여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적용에서 정부당국의 미군범죄에 대한 관할권행사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전문인력, 시설 등 환경마련도 조문개정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미군이 사고를 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미군측에 넘겨버리는 타성이 지속되는 한, 효과적인 재판권행사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평등한 방향으로의 '한-미 SOFA'의 「형사관할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한-미 SOFA'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인적 적용범위의 축소

현행 SOFA는 인적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 인적 적용범위를 "합중국 군

법에 복종하는자”로 한정하는 쪽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협정 제1조(다)(가족의 정의)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2. 한국형사관할권 제약요소 삭제

SOFA는 미군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수사권 및 사법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형사피의자에게 주어진 형사특권은 한국의 형사관할권을 제약하는 바, 지나친 제약요소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체포시 통보의무/양국의 지위 평등화

미군피의자 체포 통보시 한국과 미국의 지위 평등화가 필요하다

4. 피의자 신병인도시기 - 공소제기후 가능케

‘한-미 SOFA’는 피의자 신병인도시기가 확정판결후 한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피의자 신병인도시점을 공소제기후에 가능케 하고, 공소제기전이라도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인 경우에는 가능케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한국판결집행에 간섭배제

판결집행을 간섭하는 것은 한국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러한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6. 미국당국의 대표의 입회 없이도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집행을 가능케(제22조 제9항(사)) 개정해야 할 것이다.

7. 적대행위 및 계엄령선포시 한국형사관할권 즉시 정지(제22조 11항)를 개정하여, ‘미-일 SOFA’나 ‘NATO SOFA’처럼 적대행위 발생시 즉시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초청계약자(제15조 제8항)는 형사관할권의 인적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형사특혜를 단순 초청계약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국에도 없다.

9. 국외범 불처벌 조항(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은 한국 형법 제5조와 모순되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10. 검찰의 상소권제약(제22조 9항 합의의사록)은 폐지되어야 한다.

11. 미군피의자 재판거부권 조항(제22조 9항(카))은 폐지되어야 한다.

12. 공무증명서 발급자가 미군장성급(개정 양해사항 제22조 3항(가)-3-가)이라는 불특정적인 자를 좀더 특정화시키고, “합의 수정되지 않는 한 공무증명서는 결정적”이라는 문구를 “공무의 최종 판단은 한국법원”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3. 상기 개정안 내용과 모순되는 양해사항은 삭제하고, 여타 부문은 합의의사록으로 수렴한다.

제3절 민사청구권 관련 조항

1. 배상금분담조항의 개정

미군이 공무집행중에 가한 손해나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대한민국이 배상금의 25%를 분담하도록 한 규정은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미군의 주둔목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한미간의 동맹을 공평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규정은 삭제되거나 미국과 대한민국 쌍방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쌍방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배상금을 균등하여 분담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을 가려 그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을 가려 그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협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이 판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2. 민사소송절차에 관련된 규정의 신설

비공무중에 손해를 가한 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한 소송진행의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미군이나 고용원의 법정출석을 보장하고 재판서류의 송달절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재판서류의 송달절차의 관련해서는 “(가) 대한민국법원이나 또는 기타 당국에서 비형사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소장 또는 기타 서류와 법원명령을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중국이 설치하거나 지명한 연락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나) 대한민국법원 또는 당국이 송달을 의뢰한 서류는 위 연락기관이 지체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송달은 위 서류가 연락기관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달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뜻의 통고는 지체없이 대한민국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행해야 한다. (다) 연락기관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대하여 (나)항에 따라 그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고나 송달이 불가능하였음을 알리는 서면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나 당국은 연락기관이 서류를 재접수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송달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통고를 첨부하여 송달의뢰 서류의 사본을 재발송한다. 7일간의 기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송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군 등 관련자들의 법정출석과 관련해서는

“(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이 대한민국법정이나 기타 당국에 출두되도록 소환될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출두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락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환의 집행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정은 합중국당국이 그 가족의 출두를 보장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하여 준용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족은 대한민국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한다”와 같이 미군이나 고용원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이나 기타 당국에 소환될 경우 출석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의 판결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가) 각국의 군당국은 대한민국법원 및 기타 당국이 행한 비행사재판에서 선고 혹은 결정된 판결, 결정, 명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게 지불되는 급여 기타 지불금은 대한민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압류, 가압류 기타 대한민국법원이나 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합중국당국은 대한민국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채무자에 대한 지불금에서 공제하여 집행기관에 예치한다. (다) 대한민국법원이나 기타 당국의 비행사재판에 의한 판결, 결정, 명령이 합중국 군대의 시설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군대대표의 입회하에 대한민국집달관 이를 행한다”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방법을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미군 등의 법정출석과 서류송달, 판결의 강제집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공무중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규정의 미비로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3. 청구권포기조항의 개정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군대재산 또는 정부재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률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고의,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무집행중이나 차량, 선박, 항공기의 공용을 위한 사용중에 발생한 손해 가운데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당사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지 여

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협정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한 1,40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청구권의 포기범위를 축소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4.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미군용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로를 통행하는 미군차량과 미군이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들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므로 피해자로서는 치료비를 내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설령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미군이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군차량 중에서 작전용 차량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도 있으나 미군차량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의 장단은 보험기간이나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노무관련 조항

1. 간접고용제로 전환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간접고용제 방식으로 채용한다면 한국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근로자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주권면제특권과 군부대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협정에 규정된 현행 노무조항의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없어지게 된다. 애초에 협정체결을 위한 한미간 교섭회의에서 한국측이 간접고용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측은 간접고용제는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전쟁배상의 일부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고 그 후 독일과 일본이 여러 단계를 거쳐 동맹국으로 바뀌면서 미국이 노동경비를 부담하게 된 것인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간접고용제를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당하며 대단히 후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측의 주장은 단지 제도의 연혁에 관한 것일 뿐이고 간접고용제 자체가 후진적인 제도는 아니며 미국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도 간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미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미군부대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국내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간접고용방식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군사상 필요에 의해 해고나 장기간 쟁의행위금지, 군사작전방해시 단체행동금지와 같은 예외 규정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2.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협정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제한하고 고용주에게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무관계상의 특권을 초청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초청계약자는 오로지 주한미군만을 위하여 일하고, 그 임무가 주한미군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불과한 초청계약자를 주한미군과 동일시하여 노사관계에서 미군부대와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다른 외국 협정에서도 예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중국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협정 제28조 제2항). 그리고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사,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군대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노동쟁의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합동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사용자측인 주한미군만이 참여하고, 근로자의 대표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분쟁은 합중국의 주권면제특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구속받지 않으며 합동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합동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공정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위 위원회에 사용자인 주한미군대표의 수와 동일한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환경관련 조항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신설

1) 기지자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조항 신설

시설 및 구역에 관한 제4조 1항은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기지를 반환할 경우 원상회복과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미-일 SOFA'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제1항). 상기 조항은 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인데, 한국정부 역시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경우 동 기지에 가해진 개량이나 기지내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시설물]에 대해 미국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본 협정 제4조 2항)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지내의 환경오염은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며 미군당국의 관리소홀로 야기된 상당한 오염정화비용을 한국당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기지자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보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상액의 산정에 대한 절차규정의 합의 또한 중요하다. 생각건대 구체적인 보상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 양당국의 합의로 선정된 중재인이 판정하도록 하고, 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지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조항 신설

미군당국의 원상회복과 보상의무를 면제한 '한-미 SOFA' 제1조 1항은 기지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한국의 배타적 영역관할권에 속하는 기지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당국이 1차적 관리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지내의 환경오염행위로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기지주변의' 영역이 환경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정부는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책임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기지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미군당국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배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이 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의 부담은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2.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 조항 신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한국정부가 갖는 국제법상

의 제반권리(: 협의 및 사전통보 요청권 신설 및 구역에의 접근권, 환경오염피해조사권,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요구권, 원상회복권과 피해보상/배상권, 오염규제방지요구권 등)는 국제관습법적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한-미 SOFA'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정부는 상기 권리들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주한미군기지와 기지주변의 심각한 오염실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기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구제와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상의 제반권리를 명문화하여 미군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방지 및 해결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미군당국의 원상회복 및 손해보상/배상의무이외에도 ① 미군당국은 한국당국의 협의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기지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당국에 사전에 적절히 통보할 것(: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②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군당국은 1차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이튼 기지내의 특정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을 한국당국에 허가할 것(: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의무), ③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발생에 대하여 미군당국이 자발적으로 전상규명과 피해방지에 협조하거나 한국당국의 환경피해조사요청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 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 의무), ④ 환경오염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한국당국에 제출할 것(: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의무), ⑤ 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행위로 기지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내 환경오염을 규제하거나 방지할 것(: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의무), ⑥ 유해한 오염물질을 기지밖으로 불법을 배출한 관련 미군이나 고용원을 처벌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것(: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⑦ 기지로부터의 오염배출행위로 피

해를 입은 기지주변의 한국인 피해자가 민사청구권조항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당국의 관련증거 및 자료제출요청과 기타 청구절차에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할 것(: 손해배상청구에의 협조) 등과 같은 미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 환경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 신설

주한미군기지는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갖고 있는 관계로 주한미군 기지내에서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미국국내법상의 관련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지내에서의 오염배출행위로 지역주민과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기지내에서도 한국법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한미군기지는 접수국 국내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치외법권지역이 결코 아니며, 미군의 구성원, 군속 등은 한국영역안에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본협정의 정신에 위반되는 어떠한 활동도 삼가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본 협정 제7조).

예컨대 '독일보충협정'은 "군대 또는 군속은 그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제공된 기지내에서 그의 방위책임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기지내에서 군대는, 자국법규가 독일법규와 동등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공안전과 질서유지(public safety and order)에 관한 자국법규를 적용할 수 있으며,"(제53조 1항) "상기 조항(1항)상의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군대 또는 군속은 독일당국이 '독일의 이익'(German interests)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기지내에서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5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해외군사기지에 대하여 미국환경법규와 접수국환경법규중 보다 엄격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해 왔으므로 그러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정책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미군당국이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

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기지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관련피해자나 한국정부는 “국제 환경협약”이나 “한국환경법규”를 적용하거나 원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중대한 환경오염배출행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법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주민 역시 ‘한-미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절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관련 조항

1. 특혜의 인적범위의 개정방향

‘한-미 SOFA’는 원칙적으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특혜대상자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가족의 범위는 타국의 SOFA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겹ATO SOFA’(제1조 1항 ㉠)의 경우처럼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의 배우자나 그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일 SOFA’(제1조 ㉠)는 기타 친척이 제외된 것외에는 ‘한-미 SOFA’와 같다.

2. 출입국조항의 개정방향

1)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문제

‘한-미 SOFA’제8조 제4항은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 구성원의 가족으로 하여금 출입국시와 한국체류시 미국당국이 발부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군당국이 적절한 문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한국 출입국관리법령의 적용배재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규정상 여권 및 사증에 관한 한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

제는 미국군대 구성원에 한하므로,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 구성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NATO SOFA'의 규정(제3조 3항) 및 '미-호주 SOFA'의 규정(제2조 3항)과 같이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 구성원의 가족은 여권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여권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그리고 '독일보충협정'의 규정(제5조 1항 ㉠)과 같이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 구성원의 가족이 군용비행장을 통해 출입국할 경우에 미군당국은 한국당국에 통고하도록 하고, 한국당국은 필요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2) 신분변경시 통고문제

'한-미 SOFA' 제5조는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미군당국으로 하여금 한국당국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고시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그 신분을 상실하였다도 미군당국이 한국당국에 그 사실을 통고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 출입관리법령의 통제밖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시에는 "즉시" 한국당국에 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한다. 'NATO SOFA'(제3조 4항)의 경우에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파견국으로부터 해고되었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때에는 파견국당국이 "즉시(immediately)" 그 사실을 영역국당국에 통고하여야 하고, 또한 요구되는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21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대해서도 영역국당국에 동일한 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기간의 산정문제

'한-미 SOFA' 제8조는 그 신분이 변경되어 한국당국에 통고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한국당국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미군당국은 "상당한 기간이내에" 당사자를 한국영역밖으로 퇴거시키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합리적 기간의 판단주체 및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은 한국당국으로부터 퇴거요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70일이내로 하되,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당국이 강제추방 또는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미-호주 SOFA'(제2조 6항)의 경우에는 지위상실후 30일 이내에 출국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위상실후 30일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호주에 체류중인 때에는 미국당국이 즉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호주정부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통관 및 관세조항의 개정방향

1) 광범위한 면세특혜문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범위는 미국군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한국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적인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면제는 제9조 1항의 관세부과원칙을 무의미하게 할뿐더러 관세자주권에도 반한다.

우선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차량"에는 모든 차량이 포함되므로 'NATO SOFA'(제11조 6항)과 같이 "사용자동차(private motor vehicles)에 한해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면제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적절한 증명서", "최초로 도착한 때" "사용? "합리적인 양"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미국당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NATO SOFA'(제11조 4항)의 경우 군대, 군속 및 그들 가족의 "배타적 사용(exclusive use)을 위한 물품만이 관세가 면제되며, 또한 관세면제수입의 경우에도 합의된 세관서류와 증명서를 영역국의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세관검사의 면제문제

세관검사는 면세특권을 남용하여 비합리적인 양의 물품이 반입되거나 정상 수입을 가장하여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특히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모든 화물”에 대해서까지 세관검사를 면제한 것은 미군 PX를 통한 불법유출의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휴가나 출장명목으로 출국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이 해외시장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음란서적등을 국내로 반입해 시중에 유출시키는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엄격한 세관검사의 실시가 요청된다.

‘개정양해사항?제9조 5항의 2)은 한국의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이사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 미국당국의 검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수품이나 비합리적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심각히 의심된다는 한국세관당국의 사전통보가 있으면 미국당국은 불시의 검사를 준비하며, 이 경우 미국당국의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한국 세관당국에 부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당국의 검사에 단순히 참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관검사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금수품이나 과도한 양의 물품이 포함될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한국의 세관당국이 현장에서 미군당국의 입회하에 직접 세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보충협정?제65조 5항)의 경우 독일 세관당국은 군대 및 군속의 모든 화물에 대해 세관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공적봉인이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도 중대한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용의 봉인이 있는 우편물과 미국 군사우체국을 통한 제1종 서장을 제외한 기타 우편물 및 소포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의 입회하에 미국 군사우체국 시설내에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1967년 6월 5일 제9차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검사절차 참조). 셋째,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공된 관련정보에 입각하여 한국의 세관당국이 미군당국의 입회하에 세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이사호물이나 개인선적화물이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게 우송된 경우에도 그들의 숙소에서 미군당국과 그들의 입회하에 세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세관검사시 드러난 불법반입 및 수입이나 합리적 양을 초과한 물품의 반입 및 수입시에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미군당국의 검사에 참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3) 불법처분문제

최근 미군 PX를 통해 미국산 쌀이 다량으로 시중에 불법판매되어 유통체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면제를 받고 합법적으로 반입되었더라도 해당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된다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절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조항 신설

1.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범죄는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자국에서와 같이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빈발을 초래)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양국의 배상관례 중 보다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하도록 한다..

2. 혼혈아동의 친부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1000여명의 혼혈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종종 미군 아버지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없이 미군 아버지들에게 버림받은 채 어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다. 혼혈아

들은 미군아버지를 두었지만 미국시민이 아니다. 미국법에는 해외에서 결혼중에 태어난 아동이 미국시민권을 얻으려면 18세전에 아버지가 미국시민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외모 때문에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해군여성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찍혀있다. 사회적 낙인과 교육부족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는다. 흑인의 외모를 가진 혼혈아들은 더 심한 차별을 당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나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인권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독 SOFA'는 보충협정 26개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선언문을 비롯한 제반 부속문서가 수반된다. 이중 '미-독 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는 직접조달, 세금과 관세, 공중촬영, 운송, 통신, 정부자치단체, 부양요구, 건설 등, 제반 사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 해결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바로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에 대한 각서(1956. 4. 18 ~ 1959. 8. 3)에 미군과 독일여성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부양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군당국은 독일여성과의 사이에 혼혈아동을 둔 미군이 아동의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3. 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성병 및 에이즈 검사는 이들 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도 실시하도록 한다.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다. 이것은 이들이 성병을 전염시키는 존재라는 가정하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군이 옮길 수 있는 성병/에이즈의 피해자가 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정은 빠져 있다. 이들의 안전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에 대한 성병/에이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기지 반환 및 접수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
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대책을 포함시킨다.

4. 미군대상으로 관습과 법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미군의 주둔국 배치 직전과 직후에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사회적인 남녀관계, 지역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
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예방교육을 실시하
고 매춘금지를 명문화한다.

5.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군대는 다른 제도보다도 더 큰 오염을 유발한다. 그러나 산업체와 달리
군대오염은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다. 규정도, 감시프로그램도, 통제도 매
우 미약하다. 고도의 발암물질(dusy, 오일, 솔벤트 중금속)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땅과 물과 공기와 대양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적으로
유출(are regularly released)된다. 유해물질에 대한 군대기록은 늘 완전하
지가 않다. 필리핀과 미국의 경험에 의하며 미국군대는 오염물질의 처리
와 저장에 관한 자기들의 지침서도 종종 따르지 않는다(East Asia-US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1998). 최근 미군부대 내에서 저지
른 독극물 방출사건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제사회에서 미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실탄사격연습, 군사연
습시의 저공비행,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한국의 팀스피리트와 같은 중대한
군사활동의 환경적 영향, 심각한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집약된다. 일반적
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이하 기지)의 이용과 군사

활동에 관련된 환경파괴의 실태에는 비행기 이착륙과 폭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피해, 유해물질 배출, 실탄포격으로 인한 산림파괴, 군사훈련에 따른
자연파괴, 수질오염, 토양오염, 적토유출, 문화재 파괴, 교육환경의 파괴,
원자력 사용군함 운항과 핵무기보유에 따른 방사성물질 배출 등이 포함된
다. 특히 기지에서 배출되는 유독성물질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
는 것은 물론이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지난 98년 의왕시에 소재한 한 미
군기지 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지난 30여년
간 무공해 지역으로 보존되었던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가 회복불능 오염지
역으로 변해버렸다. 폭음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 폭음 피해는 특히 여성
과 어린이, 가축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미군국제폭격장이 있는 매향리의
경우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산모들의 유산율(여성 10명 중 2명이 이
유를 알 수 없는 유산을 경험)과 가축들의 낙태율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폭격소음은 신생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임산모
들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하며 출산을 앞두고 임산모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흉환(경기를 일으킬 때 먹일 약)과 탈지면(귀를 막아
주기 위해)을 준비해야 한다. 아기들이 종종 폭격소음에 놀라 경기를 일
으키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일은 폭격소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
기로 갈수록 포악한 성품을 드러내며 문제소년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살율도 매우 높다
는 것이 주민들의 호소다. 또한 인근주민의 35.3%가 소음성 난청에 걸려
있으며 8할 이상이 이명증세를 보이고 많은 이들이 정서불안, 현기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기지와 군대시설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질병과 사고를 알고 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은 미군의 오염문제에 대한 정보를 거의 이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SOFA 아래서 미국은 법적으로 한국(일본, 필리핀에서도)에 대한 환경정
화의 책임이 없다. 현행 SOFA에는 환경관련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구체적인 조항은 이장

회교수 발제 참조). 미군주둔과 작전수행에 따른 대기과 오염정도와 이것이 주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미군당국이 오염정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993년 미-독 SOFA에는 환경조항이 신설되었다.

6.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의 신설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1996년 상반기동안 3가지 치명적인 미군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결과 5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4명이 여성과 소녀들이었다. 이사건들은 미일간 SOFA 절차 상의 개선을 이끌어 냈는데 미국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 확대하고 SOFA 아래 있는 모든 인력이 1997년 1월부터 시작되는 추가적 자동차보험을 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선지급제도를 비롯하여 피해보상절차도 개선했다(Carolyn Bowen Francis). 한국의 경우에도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1954년 9월 미군이 질주하던 중 교통정리를하고 있던 여순경을 들이받아(영등포 소속 이정화여순경.) 좌측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게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등포 초등학교 2명(백영자(11), 최정숙(11))이 질주하던 자동차에 치여 즉사했다. 그 후에도 4세-10세의 어린이들의 피해는 계속되었다(미국범죄백서,507-521). 94년에는 이은경(19세)씨가 미군과속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했다. 이은경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았으나 가해자 윌리엄 이병은 처벌도 받지 않고 제대후 본국으로 돌아갔다(미국범죄백서,59-60).

앞으로 어린이와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SOFA의 관리를 받는 모든 미군 인력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에 드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SOFA운영의 실태

제1절 한미합동위원회 개최현황

제2절 각종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제1절 한미 합동위원회 개최 현황

※ SOFA합동위원회는 1967년. 2월이래 1999.12월까지 총 179차례 개최된 바 있으나 관련자료 취합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1991년 이후 최근 10년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제169차 합동위원회

- 1) 주 관 : 미 측
- 2) 일시 및 장소 : 1991년 6월 7일 , 주한미군기지내 SOFA회의실
- 3) 참 석 자
(우리측)
 - 수석대표의원 :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
 - 위 원 : 조성태, 이해종, 박창리, 이호진, 김인철, 김소곽

* 우리측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재경부, 농림부, 관세청 등 합동위 상하 분과위 담당 과장으로 구성

(미 측)

- 수석대표 : Ronald R. Fogleman 중장
- 위 원 : Norman G. Cooper 대령, Robert M. Werner 대령, Hank

Henrickson 주한미대사관 직원,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un Chae Sik

* 미측위원은 주한미육군·공군·해군 대표 및 주한미대사관 직원 등으로 구성

4) 협의 및 합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AND SIXTY-NIN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7 JUNE 1991

The 169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convened on 7 June 1991 in the Dragon Hill Lodg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Yongsan South Post. The US Representative, Lieutenant General Ronald R. Fogleman, who is also the Deputy Commander of USFK, presided at the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was represented by Mr. BAN Ki Moon, Director General of the American Affairs Bureau of the Foreign Affairs.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73 recommendations of its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relating to various real estate matters and assigned 58 new tasks to the subcommittee. It approved recommendations from its Utilities Subcommittee pertaining to the rates for electricity furnished to USFK elements and railroad rates changes for USFK-owned rail cars using the Korean rail system.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a recommendation from its Criminal Jurisdiction Subcommitte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procedures for requesting waivers of jurisdiction.

169th JC (Encl 37)

7 June 91

2. 제170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한측

2) 일시 및 장소 : 1991년 12월 11일, 외교부 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반기문 외무부 미국주장

- 위 원 : 박창희, 이호진, 조준혁

(미 측)

- 수석대표 : Ronald R. Fogleman 중장

- 위 원 : Peter U. Sutton 대령, C. A. DeLateur 대령,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un Chae Sik

4) 협의 및 합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IE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11 DECEMBER 1991

The 170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convened on 11 December 1991 in the conference roo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oul,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Mr. BAN Ki Moon,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American Affairs Bureau, presided at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was represented by Lieutenant General Ronald R. Fogleman, who is also the Deputy Commander of USFK.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35 recommendations of its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relating to various real estate matters and

assigned 28 new tasks to the subcommittee. The Joint Committee designated eleven invited contractors for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according to Article XV of the SOFA, and it withdrew such designations for four invited contractors who had completed contracts with USFK.

The next Joint Committee is scheduled to be held on 15 May 1992 on the Yongsan compound with the U.S. Representative presiding.

170th JC (Encl 43)

11 Dec 91

3. 제171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미 측

2) 일시 및 장소 : 1992년 6월 26일, 주한미군기지내 SOFA 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 위 원 : 유명한, 강석인, 노양우, 박용식, 송명용, 이호진, 조준혁

(미 측)

- 수석대표 : Ronald R. Fogleman 중장

- 위 원 : Ralph S. Sutton 대령, Dennis F. Coupe 대령, C. A. Delateur 대령, Hank Henrickson 주한미대사관 직원,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un Chae Sik

4) 협의 및 합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 FIRST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JUNE 26, 1992

The 171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June 26, 1992 in the SOFA conference room, United States Forces Korea, Yongsan Main Post.

Among major activities during the meeting, the Joint Committee discussed actions that would be taken to reduce the traumatic effect forced reductions might have on employees of USFK.

The Ministry of Labor announced implementation of a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hat would provide job referral and retraining opportunities to workers while providing them a partial monetary allowance during the transition.

The Ministry of Finance stated that it would establish a household and business loan program for those desiring to establish their own businesses. Additionally, the Transportation ministry promised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s would grant priority consideration to USFK drivers who wanted to become taxi operators.

The Joint Committee declared that it would keep dialog flowing to continue to foster an exchange of ideas that might produce additional innovative and imaginative ways to provide for the concerns of USFK employees. To that end, the US and ROK Representatives agreed to continue to look for sol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SOFA.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32 recommendations of its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relating to various real estate matters and

assigned 33 new tasks to the subcommittee. The Joint Committee also designated nine invited contractors to execute contracts according to Article XV of the SOFA. The Committee withdrew invited contractor status for four invited contractors who had completed contracts with USFK.

In the area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the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Special Committee, a special body charged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determine additional conciliation efforts that might be used in resolving individual labor disputes.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Lieutenant General Ronald R. Fogleman, who is also the Deputy Commander of USFK, presided at the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was represented by Mr. CHUNG Tae Ik,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American Affairs Bureau, presided at the meeting.

The next full Joint Committee Meeting is scheduled to be held on 23 October 1992 in the ROK Government Office Building, Seoul.

171st JC (Encl 51)

26 Jun 92

4. 제172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한 측

2) 일시 및 장소 : 1993년 2월 19일, 외무부 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 위원 : 배진, 김동환, 노양우, 박영기, 김진환, 이학희, 박영삼, 박성복, 안치성, 김영선, 조준혁

(미 측)

- 수석대표 : Howell M. Estes III 중장

- 위원 : Ralph S. Saunders 대령, John R. Hamilton 대령, John W. Schwab, Jr. 대령,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un Chae Sik

4) 협의 및 합의사항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SECOND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FEBRUARY 19, 1993

The 172nd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February 19, 1993 in the conference room in the Republic of Korea Unified Government Building, Seoul,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Mr. CHUNG Tae Ik, Director General of the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ided at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Lieutenant General Howell M. Estes, III, who is also the Deputy Commander of USFK, cochaired the meeting.

Among major activities during the meeting, the Joint Committee agreed to evaluate procedures related to legal rights guaranteed US forces personnel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when they are tried in Korean courts. The Joint Committee also agreed to evaluate procedures to report US forces personnel entering and exiting Korea,

and to evaluate connecting this report to the computerized Republic of Korea immigration reporting system.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47 recommendations of its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relating to various real estate matters and assigned 23 new tasks to the subcommittee. Six recommendations of the Utilities Subcommittee concerning rates for water and trash disposal services were also approved. Additionally, the Joint Committee designated 11 invited contractors to execute contracts according to Article XV of the SOFA, while withdrawing invited contractor status from three invited contractors who had completed contracts with USFK.

The next full Joint Committee Meeting is scheduled to be held on 17 September 1993 in the SOFA Conference Room, United States Forces Korea, Yongsan Main Post, Seoul.

172nd JC (Encl 48)

19 Feb 93

5. 제 173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미측

2) 일시 및 장소 : 1993년 10월 8일, 주한미군내 SOFA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정태익 외무부 미주국장

- 위 원 : 임성준, 이성규 대령, 김영식, 김동환, 노양우, 정동기, 장재구, 박영삼, 이선영, 김용선, 윤순구, 박찬경

(미 측)

- 수석대표 : Howell M. Estes III 중장

- 위 원 : Ralph S. Saunders 대령, John R. Hamilton 대령,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un Chae Sik

4) 협의 및 합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THIRD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OCTOBER 8, 1993

The 173rd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October 8, 1993 at the Yongsan Army Garrison.

The Joint Committee reported that a new subcommittee, which will study matters of mutual environmental concern, was officially constituted on July 16, 1993. The Environmental Subcommittee will make recommendations to the Joint Committee concerning environmental matter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At the meeting, the Environmental Subcommittee was tasked to evaluate the potential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and around US installations and to jointly develop, with the Utilities Subcommittee, procedures relating to local trash collection utility services for USFK.

The Joint Committee also approved 30 recommendations of its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which included the return of more than 203,000 pyong of land.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were

four field radar sites, Camps Garry Owen, Indian and Seattle, and partial returns of Camps Pelham and Edwards. The Joint Committee assigned 36 new tasks to the subcommittee.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Lieutenant General Howell M. Estes III, who is also the Deputy Commander of USFK, presided at the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was represented by Mr. JANG Jai Ryong, Director General of the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next full Joint Committee meeting is scheduled to be held on February 25, 1994, in the ROK Government Office Building, Seoul, with the ROK Representative presiding.

173th JC (Encl 68)

8 Oct 93

6. 제174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한 측

2) 일시 및 장소 : 1994년 4월 29일, 외교부 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장재룡 외교부 미주국장
- 위 원 : 조용하, 이성규 대령, 김동환, 노양우, 정동기, 박영선, 이선영, 한명재, 이원익

(미 측)

- 수석대표 : Howell M. Estes III 중장
- 위 원 : Ralph S. Saunders 대령, John R. Hamilton 대령, Sands

A. Robnick 대령,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un Chae Sik

4) 협의 및 합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FOUR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APRIL 29, 1994

The 174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April 29, 1994 in the main conference room of the Republic of Korea Unified Government Building, Seoul, Korea.

The Joint Committee tasked the Utilities Subcommittee to review a 1980 agreement concerning electric power rates applicable to US armed forces in Korea and to recommend appropriate revis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provision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also approved 16 recommendations of its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which included the return of the Choejongsan Satellite Tracking Site, release of a portion of Camp Walker in support of the expressway expansion project for Taegu City, and the return of approximately 41,000 pyong of real estate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teaching hospital for the people of Tongduchon. The Joint Committee assigned 13 new tasks to the subcommittee.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Mr. JANG Jai Ryong, Director General of the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ided at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was represented by Lieutenant General Howell M. Estes, III, the Deputy Commander of

USFK.

The next full Joint Committee meeting is scheduled to be held on October 7, 1994, in the SOFA Conference Room on the Yongsan Military Compound.

174nd JC (Encl 33)

29 Apr 94

7. 제175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미측

2) 일시 및 장소 : 1994년 11월 1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내 SOFA 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장재룡 외교부 미주국장

- 위 원 : 이성규 대령, 오동환, 김진영, 노영우, 정동기, 박영선, 김종갑, 장재구, 김욱, 이원익, 조수영

(미 측)

- 수석대표 : Ronaed W. Iverson 중장

- 위 원 : V. M. Findley 대령, Brent P. Green 대령, Sands A. Robnick 대령,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un Chae Sik

4) 협의 및 합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FIF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NOVEMBER 17, 1994

The 175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November 17, 1994 at the Yongsan Army Garrison, Seoul, Korea.

The Joint Committee discussed the use of USFK Non-Appropriated Fund facilities by Korean nationals and agreed to review procedures that would help restrict access by local nationals to those facilities offering casino games and slot machine play.

The two sided also decided to evaluate procedures at USFK clubs to ensure that duty-free goods are only being sold to authorized patrons. It was further agreed that USFK would work with the ROK Government to reduce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 special club members.

The two Government Representatives agreed to continue to work closely to reconcile labor dispu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thirteen recommendations of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which included the return of some 5700 pyong of real estate, and also assigned 13 new tasks to that subcommittee.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Lieutenant General Ronald W. Iverson, Deputy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presided at the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was represented by Mr. Jang Jai-Ryong, Director General of the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next full Joint Committee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ROK

Representative and is scheduled to be held in April 1995 at the ROK Government Office Building, Seoul.

175th JC (Encl 36)

17 Nov 94

8. 제176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한측

2) 일시 및 장소 : 1995년 6월 28일 외교부 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임성준 외무부 북미장관
- 위 원 : 문영환, 김진영, 변재진, 김수영, 조창구, 노양우, 정동기, 김윤천, 이영식, 조도영, 강명구, 김욱, 이원익, 최형찬

(미 측)

- 수석대표 : Ronaed W. Iverson 중장
- 위 원 : V. M. Findley 대령, Brent P. Green 대령, Bruse E. Sonn, Carroll. B. Hodges 박사,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Mark C. Minton 주한미대사관 직원, James R. Keith, Mun Chae Sik

4) 합의 및 협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SIX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JUNE 28, 1995

The 176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the afternoon of June 28, 1995 in the conference room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oul,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Mr. Yim Sung Joon, notified the US Representative, Lt.Gen Ronald W. Iverson, that Korean authorities are considering possible amendment of the US-ROK SOFA.

Mr. Yim explained that the ROK government will present its official position to the US government after Korean authorities complete their comprehensive review. He further explained that the ROK government felt that a review of the SOFA would contribute to the strong US-ROK security alliance.

Both Representatives agreed that any official request for changes to the SOFA would need to be presented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Joint Committee discussed their concerns about the number of incidents that have occurred between members of USFK and Korean civilians. The two Representatives agreed principle to activate the Ad Hoc Subcommittee on Civil-Military Relations to develop ways means to improve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between US soldiers and the Korean people.

In an effort to improve the adjudication process for claims filed against USFK by Korean civilians, the Joint Committee tasked its Civil Jurisdiction Subcommittee for Claims to consult on procedures to streamline and expedite the claims process.

The Ad Hoc Subcommittee on Plant Disease and Inspection was also tasked to consult on development of a system of mutually acceptable

inspection and treatment procedures that could be instituted to guar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harmful pests and plant disease into Korea.

The Joint Committee approved 18 recommendations of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including conversion of Pier #6 in Pusan to joint-use, and assigned 25 new tasks to the subcommittee. It also took approval action on four recommendations of its Utilities Subcommittee concerning increases in the rates charged USFK for water provided by the ROK.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Mr. Yim Sung Joon, Director General of the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ided at the meeting. The US Representative, Lt.Gen Ronald W. Iverson, is the Deputy Commander of USFK and the Commander of 7th Air Force.

The next Joint Committee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US Representative and is scheduled to be held October 1995 in the SOFA Conference Room on the Yongsan Military Compound.

176th JC (Encl 63)

28 Jun 95

9. 제177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미측

2) 일시 및 장소 : 1997년 2월 28일, 주한미군내 SOFA회의실

3)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유명환 외교부 북미장관

- 위 원 : 최종호, 노양우, 공덕수, 윤용근, 강원순, 김수영, 하영효,

박노벽

(미 측)

- 수석대표 : Ronaed W. Iverson 중장

- 위 원 : Thomas Quelly 대령, Vincent Faggioli 대령, Lou Deasaro 대령, Robert T. Mounts,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4) 합의 및 협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SEVEN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FEBRUARY 28, 1997

The 177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February 28, 1997 at the Yongsan Army Garrison, Seoul, Korea.

The Joint Committee discussed how to improve procedures to dispose of traffic citations issued to SOFA personnel and agreed to work to clarify for SOFA personnel how the Korean traffic enforcement system works.

The two sided also continued their dialogue related to refining procedures to address ROK government concerns about access by Korean nationals to USFK clubs, especially those offering casino-style gambling and slot machines. The Korean side pointed out that although USFK has taken many positive steps to improve controls over unauthorized access, more should be done. The Two Representatives agrees that the Finance Subcommittee would be directed to present it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Both sides exchanged views on the status of SOFA talks and agreed to work with their respective sides to try to bring the talks to mutually acceptable resolution as soon as practicable.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Lieutenant General Ronald W. Iverson, Deputy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presided, presided at the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was represented by Mr. Yu Myung Hwan,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next Joint Committee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ROK Representative and is scheduled to be held in the later half of 1997 at the ROK Government Office Building, Seoul.

10. 제178차 합동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4월 17일, 외교부 회의실

2) 참석자

(우리측)

- 수석대표 : 권종락 외교부 북미장관
- 위 원 : 원종찬, 최종호, 노양우, 이창재, 홍효식, 조정호, 정부균, 최태호, 전병성, 유병린, 조성환

(미 측)

- 수석대표 : Joseph E. Q Hurd 중장
- 위 원 : Thomas Quelly 대령, Vincent Faggioli 대령, D. P. Austion 대령, Robert T. Mounts,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James C. Whitlock 참사관

3) 협의 및 합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EIGH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APRIL 17, 1998

The 178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April 17, 1998 at the ROK Government Complex, Seoul, Korea.

The Joint Committe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talks aimed at ensuring that only wholesome food products are brought into Korea. USFK will continue best efforts to alleviate Korean concerns over importation of unwanted pests.

The two Representative lauded a report that USFK had concluded an agreement with the Korean Employees Union and that USFK began participation in the Employee Insurance Plan on July 1, 1997.

The two Representative discussed an upcoming meeting of a Special Working Group and expressed hope that the Group will develop mutually agreed procedures for the disposition of traffic citations issued to SOFA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traffic enforcement system.

USFK noted that it would continue to control access to its slot machine rooms to address ROK government concerns about Korean national access.

Both sides exchanged views on how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ose facilities and areas currently being used by USFK. It was noted that the two sides were able to reach a positive agreement on the return of some 5000 acres (6.06M pyong) of land to the people of

Tongducho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Mr. Kwon Jong Rak,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resided at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to the Joint Committee is Lieutenant General Joseph E. Hurd, Deputy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The next Joint Committee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USFK and is scheduled to be held in the later half of 1998 at Yongsan Military Garrison, Seoul.

11. 제179차 합동위원회

1) 주 관 : 미 측

2) 일시 및 장소 : 1999년 12월 1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내 SOFA회의실

3) 참 석 자

(우리측)

- 수석대표 : 송민순 외교부 북미장관
- 부 대표 : 윤병세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 위 원 : 김동기, 박충신, 강형욱, 강원순, 손정준, 이창재, 백종호, 송봉현

(미 측)

- 수석대표 : Charles R. Heflebower 중장
- 위 원 : Timothy J. Collins 대령, Uldric L. Fiore, Jr. 대령 Gregory R. Ostrowski 대령, Robert T. Mounts, James T. Burns, Jr., Malcolm H. Perkins, W. David Straub 참사관

4) 합의 및 협의사항

JOINT US-ROK PRESS RELEASE ONE HUNDRED SEVENTY-NINTH US-ROK

JOINT COMMITTEE MEETING, DECEMBER 17, 1999

The 179th meeting of the US-ROK Joint Committee under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held December 17, 1999 in the SOFA Conference Room at Yongsan Army Garrison, Seoul, Korea.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Lieutenant General Charles R. Heflebower, Deputy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hosted the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Mr. Song Min Soon,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o-chaired the meeting.

The Joint Committee Representatives engaged in depth on how to overcom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use and return of SOFA facilities and areas. To help develop a view of how USFK will fit into local community expansion and modernization plans for the next century, the US Representative proposed to provide a concept briefing to the ROKG in February 2000. The ROK Representative welcomed the USFK offer. The US Representative expressed the USFK position for greater efforts to implement the existing SOFA in a manner designed to resolve land use and military training issues.

The Joint Committee also exchanged views on a wide variety of issues including development of mutually agreeable plant quarantine procedures to satisfy Korean government concerns over the possible importation of foreign insects or disease in USFK food supplies. Further they agreed to review procedures for US-ROK joint investigation teams working to curb black marketing and procedures

used to check for prohibited items in military cargo and mail.

The Representatives agreed to continue best efforts to take all measures practicable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y directed their Environmental Subcommittee to establish a regular meeting schedule, continue exchanging lists of environmental points of contact for USFK bases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in order to facilitate closer bilateral discussions on environmental matters and concerns.

The ROK Representative took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 ROKG position that the SOFA review talks should resume without delay.

The next Joint Committee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scheduled to be held in the first half of 2000 at the ROK Government Office Building, Seoul.

제2절 재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1. 재무분과위원회

1) 1991. 12. 5일자 회의

(1) 참석인원 (18명)

- ① 우리측 (8명) : 재무부 세제실 세제심의관(한국측 교체위원장),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 사무관, 재무부 세제실 소비세과장, 국방부 군수국 군수협력과장, 국세청 간세국 소비세과 사무관, 재무부 관세국 관세협력과장, 재무부 세제실 및 관세국 담당사무관 2인
- ② 미 측 (10명) : 175경리단장(미국측 분과위원장), 한.미연합사 전략정책과장, 수송과장, 미 대사관 읍저버, 주한미군 법무감, 한.미연합사 전략정책 장교, 175경리단 경리정책과장, 주한미군 법무감실 변호사, 주한미군 SOFA사무국 부간사, 통역

(2) 회의내용

① 회의 주제

- 1991. 6월 SOFA 합동위원회 제169차 회의에서 부여한 과제
- 방위비 분담의 일환으로서 한미 차량지원 합의각서에 의해 국방부(한국정부)가 구매하여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차량의 면세 해당여부에 관한 한미 양측입장 검토

② 회의 결과

- 우리측은 과세대상임을, 미측은 면세대상임을 각자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회의 장소 : 재무부 대회의실

2) 1997. 6. 3일자 회의

(1) 참석인원(13명)

- ① 우리측(6명) : 재경원 관세협력과장(한국측 분과위원장), 관세협력과 사무관, 국세청 국제조세과 서기관, 외무부 북미3과 사무관, 관세청 특수조사과 사무관, 관세청 통관과 사무관
- ② 미 측(7명) : 한미연합사 대령(미국측 분과위원장)외 6명

(2) 회의내용

① 회의 주제

- 97. 2. 28 SOFA 합동위원회 제177차 회의에서 부여한 과제
- 내국인의 미군기지내 유기장(카지노 및 슬롯머신장) 출입문제, 주한 미군클럽 문제, 부산 Seamen's Center 한국인 출입문제

② 회의 결과

- 미측은 우리측 제안에 대한 소극적 반응
- Seamen's Center 한국인 출입문제 및 미군기지내 유기장 합동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미측은 입장을 추후 전달을 약속

(3) 회의장소 : 용산 미군기지 SOFA 회의실

3) 1997. 12. 4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5명)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장, 관세협력과 사무관, 외교통상부 북미3과 사무관, 국세청 국제조세과 서기관, 관세청 특수조사과 사무관
- ② 미 측(6명) : 한미연합사 대령 외 5명

(2) 회의내용

① 회의주제 : 97. 6. 3 회의와 동일

② 회의결과

- 내국인의 미군기지내 유기장 출입에 대해 미측은 한국인의 출입통제를 약속
- 미군기지내 유기장에 대한 합동실태조사는 곤란하나 한국측의 비공식적 방문은 환영
- 슬롯머신장 출입 한국인 명단을 한국측에 통보 약속 및 합의 회의록을 차기 합동위원회에 상정기로 함
- 98. 4. 17 제178차 합동위원회에 상정된 '97. 12. 4일자 재무분과위원회 공식회의 합의회의록에 대해 미측 합동위원회에서 세부내용 수정 요구.

(3) 회의장소 : 재정경제원 회의실

4) 1999. 4. 8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5명)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장, 관세협력과 사무관, 외교통상부 북미3과 사무관, 국세청 국제조세과 서기관, 관세청 특수조사과 사무관
- ② 미 측(6명) : 한미연합사 대령 외 5명

(2) 회의내용

① 회의주제 : 97. 6. 3 회의 및 97. 12. 4 회의와 동일

② 회의결과 : 재무분과위원회(97. 12. 4) 회의록의 세부내용에 합의

- 미측은 미군기지내 카지노 등에의 한국인 출입통제를 약속. 단, 합동실태조사 실시 등 우리측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공식 방문을 제안

- 미측은 주한미군 클럽의 한국인 회원권 발행한도(전체 주한미군의 3%)를 준수하겠다고 약속
- 주한미군의 편의시설인 부산 소재 Seamen's Center의 불법적인 내국인 출입허용이 사실일 경우 동 시설의 면세혜택 철회여부를 협의하기로 동의

(3) 회의장소 : 용산 미군기지 SOFA 회의실

5) 현재 재무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김의수 재경부 관세협력과장
- 간사 : 정재수 재경부 관세협력과

(2) 미측

- 위원장 : (재무) J Gibert 주한미군 175 재무단장 (대령)
(인사) T Lailey 주한미군 인사참모(대령)
- 간사 : (재무) P Dailey 주한미군 175 재무단 재무정책과장

2. 식물검역 임시분과위원회

1) 1989. 4. 11일자 회의

(1) 참석인원(18명)

- ① 우리측 : 국립식물검역소장 김윤선의 8명
- ② 미측 : 주한미군 서비스 및 에너지과장 G. N. Plocek의 8명

(2) 회의내용

- ① 주한미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의 필요성 강조 및 우리측 한.미간 식

물검역합의서 초안을 미국에 제공

- ② 미측은 우리측 초안을 미 농무부에 검토요청, 미 농무부는 양국 국방장관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

(3) 회의장소 : 국립식물검역소 회의실 (안양)

2) 1995. 5. 18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 농림부 기술협력과장 강명구의 4명
- ② 미측 : 주한미군 Lively 대령의 4명

(2) 회의내용

- 주한미군용 농산물 검역합의각서의 수정(안)을 우리측에서 작성후 협의를 재개키로 함

(3) 회의장소 : 서울 용산 미군기지

3) 1996. 6. 26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 농림부 기술협력과장 하영효의 5명
- ② 미측 : 주한미군 Agnew 대령의 5명

(2) 회의내용

- 미측은 우리측 초안의 수용이 불가함으로 미측에서 대안을 제출키로 함

(3) 회의장소 : 농림부 회의실

4) 1998. 7. 14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유병린외 5명
- ② 미 측 : 주한미군 수의검사소장 Ronald Dutton 대령외 4명

(2) 회의내용

- ① 미측은 우리측 초안에 대하여 본국정부와 협의한 대안(Counter Proposal)을 제시
- ② 미군자체 검사 등

(3) 회의장소 : 농림부 회의실

5) 1998. 10. 20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유병린외 5명
- ② 미 측 : 주한미군 수의검사소장 Ronald Dutton 대령외 5명

(2) 회의내용

- 검역주체(우리측 : 국립식물검역소, 미측 : 주한미군수의검사소) 문제에 대한 상호 의견 대립으로 서로의 입장만 확인

(3) 회의장소 : 서울 용산 미군기지

6) 2000. 4. 19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유병린외 5명

- ② 미 측 : 주한미군 수의검사소장 James A. Blagg 대령외 3명

(2) 회의내용

- 주한미군 농산물에 대하여 “한.미합동검역”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다시 논의키로 함

(3) 회의장소 : 농림부 대회의실

7) 2000. 10. 11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 통상협력과장외 6명
- ② 미 측 : 수의검사소 James A. Blagg 대령외 4명

(2) 회의내용

- ① 한미합동검역 관련 우리측안을 미측에 설명함.
- ② 한미간 식물검역합의서(양측안) : 식물검역합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측안은 합동위 공식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이므로 양측간 합의 없이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③ 검역주체에 관한 최종 협의내용
 - 한미 양측은 2000.4.19일 개최된 식물검역 임시분과위원회에서 “한미합동검역”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키로 하였음
 - “한미합동영역”의 형태로 검역이 실시될 경우 검역주체는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관과 주한미군수의검사소의 검역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입장임

(3) 회의장소 : 서울 용산미군기지

8) 식물검역 임시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유병린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 간사 : 백종호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2) 미 측

- 위원장 : J Blagg 주한미군 수의검사소장(대령)
- 간사 : M Perkins 주한미군 부사령관 특별보좌관실 직원

3. 민사청구분과위원회 개최현황

1) 1996. 4. 23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5명) : 법무부 송무과장 및 검사, 외무부 북대2과 사무관, 국방부 국제법과 법무관 등
- ② 미 측(6명) :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 및 구상과장, 대외배상관, 주한미군 국제업무과장 등

(2) 회의내용

- ① 회의주제 : 협정배상사건 신속처리방안 협의
- ② 합의사항 : 실무자회의를 구성(상호 각 2인)하여 계속 논의, 실무자 합의사항을 위원회에 상정

(3) 회의장소 : 주한미군배상사무소 회의실

2) 1997. 1. 15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3명) : 법무부 송무과 검사 외 2인
- ② 미 측(3명) : 주한미군배상사무소 배상 및 구상과장, 대외배상관 등

(2) 회의내용

- ① 회의주제 : 협정배상사건 신속처리방안(절차서식 직접 송부·회송, 절차서식 2호와 3호의 통합·간소화)
- ② 합의사항 : 절차서식 직접 송부 계속 협의, 절차서식 통합양식(안) 마련 및 검토

(3) 회의장소 : 주한미군배상사무소 회의실

3) 1997. 12. 11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2명) : 법무부 송무과 검사 외 1인
- ② 미 측(2명) :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 대외배상관

(2) 회의내용

- ① 회의주제 : 협정배상사건 신속처리방안(절차서식 우편·FAX 송부, 절차서식 2호와 3호의 통합)
- ② 합의사항 :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업무의 중복으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선기관의 의견이 있고 현행 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확인

(3) 회의장소 : 주한미군배상사무소 회의실

4) 1998. 3. 6 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 건의 및 SOFA 합동위원회 승인

(1) 건의일시 : 1998. 3. 6

(2) 건의자 : 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 우리측 의장 (법무부 송무과장), 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 미측 의장(주한미군배상 사무소장)

(3) 건의내용 및 승인사항 : 배상절차의 공동검토에 따른 상호협의 결과 (미국측 청구처리절차 소요기간 단축, 청구처리에 전담하는 전문가 고용, 청구처리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 계속)

(4) SOFA 합동위원회 승인일자 : 1998. 3. 27

5) 2000년 3월~5월 개최 한·미배상관계회의

(1) 회의일시 및 장소

- ① 2000. 3. 8 : 제1차회의 용산 하텔하우스
- ② 2000. 3. 17 : 제2차회의 및 법무부 송무과장실
- ③ 2000. 4. 4 : 제3차회의 및 법무부 송무과장실
- ④ 2000. 5. 16 : 제4차회의 및 법무부 송무과장실

(2) 참석인원

- ① 우리측(5명) : 법무부 송무과장 및 검사, 사무관 등
- ② 미 측(4명) :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 및 대외배상관 등

(3) 회의내용

- ① 회의주제 : 협정배상사건 신속처리방안 협의
- ② 합의사항 : 경미한 사건에 대한 절차서식 생략, 사전지급제도 활성화, 사전지급시 분담액 감경, 사전지급사실 통보 기한 및 방법 규정

※ 1996년 이전 자료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음

6) 현재 민사청구권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법무부 송무과장(부장검사)
- 위 원 : 법무부 송무과 검사 및 사무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사무관, 국방부 군사시설국 육군중령 및 국제법과 법무관,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 사무관, 외교부 북미3과 사무관

(2) 미 측

- 위원장 :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 (육군 중령)
- 위 원 : 주한미군 국제업무과장(공군 중령) 및 전쟁법과장(해군 중령), 주한미군배상사무소 대외배상과장(변호사-현재 공석) 및 구상과장(육군 대위), 대외배상관, 주한미군 부사령관 특보

4. 환경분과위원회

1) 제1차 환경분과위원회

(1) 일 시 : '93. 10. 20 (수) 14:00 ~ 16:00

(2) 장 소 : 용산 주한미군 영내 SOFA 회의실

(3) 참 석 자 : 22명 (한국측 10, 미국측 12)

(4) 의 제

- ① 한국과 주한미군의 환경조직 체제 및 기능
- ② 주한미군기지 영내 및 그 주변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평가
- ③ 주한미군기지 발생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방안

(5) 회의결과

- ① 필요시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현안별 실무그룹 구성·운영
- 환경오염 평가에 관한 Action Plan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개최

하기로 합의

- ② 주한미군이 지켜야 할 환경규정 작성시 환경부와 협의
- ③ 주한미군 환경규정(EGS)은 OEGBD와 각종 환경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름
- ④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환경관련자료 요청시 가능한 협조

2) 제2차 환경분과위원회

(1) 일 시 : '98. 2. 17 (화) 14:00 ~ 16:00

(2) 장 소 : 환경부 6층 회의실 (626호)

(3) 참석자 : 24명(한국측 10명, 미군측 14명)

(4) 회의결과

- ① 미군측이 전달한 환경기준에 대하여 검토후 제·개정할 사항을 미군측에 통보하여 향후 동 기준 개정시 반영기로 함
- ② 오산미군기지(K-55)의 하수처리문제는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③ 미군측은 환경부의 협조로 한국폐자원수집협의회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재활용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감사표시 및 지속적인 협조 요망
- ④ 오염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환경분야 협력채널 구성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함

3)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1) 일 시 : '98. 7. 9 (목) 14:30 ~ 17:30

(2) 장 소 : 용산 미8군 SOFA 회의실

(3) 참석자 : 25명(한국측 12명, 미군측 13명)

(4) 회의결과

- ① 하수처리문제는 「군부대 발생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미군부대 하수문제를 처리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동의
- ② 환경오염사고와 관련, 의왕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2중 배관설치 등 우리측 요구사항 조속히 이행 합의, 동두천 건설폐기물 투기건과 관련 투기된 건설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수사내용은 조사종료 후 우리측에 그 결과 통보하기로 합의
- ③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미측이 합의
- ④ 미군측도 오염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 오염사고시 통보체계(안)을 마련하여 11월경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합의

4) 제4차 환경분과위원회

(1) 일 시 : 2000. 1. 27 (목) 10:00 ~ 12:50

(2) 장 소 : 환경부 1층 회의실 (113호)

(3) 참석자 : 18명 (한국측 8명, 미군측 10명)

※ 평택시, 의왕시, 군사시 관계관이 읍저버로 참석

(4) 회의결과

- ① Camp Casay 건설폐기물 투기문제는 미군측이 재활용장비를 구입하여 재활용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종결되었음을 보고
- ② Madison기지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미군측에서 그 간의 방제노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본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적의 방제방법을 검토하기로 합의
- ③ 주한미군기지 발생오수의 지자체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는 Written Agreement의 작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 ④ 한·미간 환경협력의 강화를 위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쌍방향의에 따라 연 2회 개최하기로 합의
- ⑤ 우리측의 토양오염실태 등 주한미군 환경상태에 대한 자료공유 및

합동조사 제안에 대해 미군측은 조사의 범위 및 내용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쌍방합의의 필요성 강조

5) 현재 환경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위 원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외교부 북미3과장, 국방부 환경과장

(2) 미 측

- 미 7공군 공병참모, 미 해군 군수담당장교, 주한미군 J4 부군수참모, 주한 미8군 부참모장, 주한미군 국제부장, SOFA 담당 간사, 주한미 대사관 과학기술과 공사참사관, 주한 미8군 환경담당관, 오산공군기지 환경책임관

5. 노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1) 1989. 3. 2/ 3/ 24/ 7. 13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① 우리측 : 노정국장담당사무관
- ② 미 측 : 민간인 인사처장 인사과장 노동고문

(2) 회의내용

- ① 의제 : SOFA 노무조항 재검토
- 15조 3항의 '초청계약자 소속 고용원'의 정의문제 명료화

- 17조 4항의 냉각기간 단축 문제
- 쟁의행위시 한미 합동 조사 문제

② 합의내용

- 15조 3항과 관련한 양해 사항 건의
- 쟁의해결 절차 개선 : 한국측 요청에 따라 징계해고에 대한 미군 소청기록의 노동부 대표 열람 허용 노조간부 징계시 노동부 통보

③ 기타 사항

- 한국측은 미군 가족의 채용 문제는 불허함을 밝히고, SOFA 17조 3항의 conform with → comply with로의 개정 요청

2) 1991 5. 16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한미 양측 위원장 및 위원 전원

(2) 회의내용

- ① 90. 10. 20 쟁의에 대한 조정
- ② 감원문제
- ③ 축적된 병가에 대한 현금지급
- ④ 감원시 사후대책 보상금

3) 1992. 7. 31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한미 양측 위원장 및 위원 전원

(2) 회의내용

- 주한미군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 변경문제와 이에 대한 대근로자 의견조사의 기본 원칙